# 학교안전공제 제도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사고)

2020. 8.



# 목 차

I. 공제회 일반사항
1. 목적 및 기능
2. 설립배경 및 연혁 1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상제도 비교 2
4. 조직도
5. 법적 성격 3
6.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4
7. 공제료의 부과 및 납부 4
Ⅱ.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1. 학교안전사고 개념 및 조치사항 5
2. 공제급여 종류 및 청구절차 7
□ 요양급여 8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15
□ 장의비
□ 위로금 ···································
□ 보전비용 ····································
3. 공제급여 지급결정 18
4. 공제급여 지급제한
5. 공제급여 부정수급 20
6. 요양연장신청 제도 20
7. 심리상담 지원 제도 21
Ⅲ. 학교폭력 피해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
□ 흑포흑흑 퓌애흑ớ 기전 세조 ···································

# I. 공제회 일반사항

# 1. 목적 및 기능

- □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신속· 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지출한 **손해방지·경감 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 등 지원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원**과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권 행사**

# 2. / 설립배경 및 연혁

#### □ 설립배경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규정(1991. 5. 3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 9. 1)하여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 □ 주요연혁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창립총회 개최 (1991. 2. 11.)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인가 (1991. 3. 21.)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등기 (1991. 4. 9.)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개시 (1991. 9. 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2007. 1. 2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07. 9. 1.)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해산 이사회 개최 (2007. 7. 24.)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설립위원회 개최 (2007. 8. 8.)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해산 허가 (2007. 8. 27.)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해산 등기 (2007. 9. 3.)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등기 (2007. 9. 3.)
  -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 업무개시: 2007. 9. 1.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상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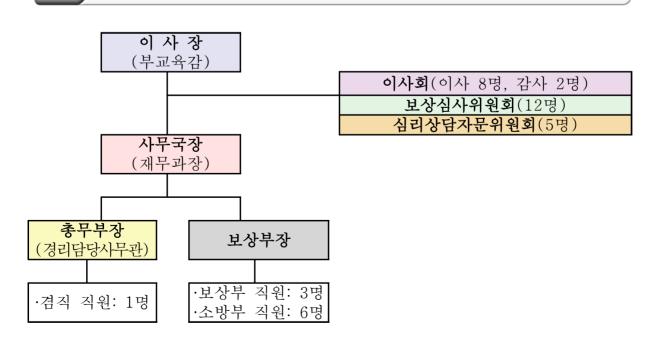


- ① 학교급식 / 가스중독
- ② 일사병

3.

- ③ 이물질의 섭취
- ④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포함)
- ① 학교배상책임 (제3자 대인·대물 보상)
- ②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 ③ 놀이시설 사고 보상
- ④ 급식사고와 관련된 과태료
- ⑤ 교직원 차량 파손 피해 보상

# 4.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조직도



# 5. 법적 성격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공제료 부과·징수, 공제급여의 지급 등과 교육감이 위탁한 사업 수행
- 단, 보상업무의 처리가 공법상 행정처분은 아님(판례)
- □ 사회보장적인 이중 성격(실손손해보험+생명보험)의 특수보험
- □「학교안전법」외의 사항은 재단법인에 준하는 민법 및 상법 준용
- □ 「학교안전법」시행 이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성 격	ㅇ「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ㅇ「학교안전법」에 의한 특수법인
명 칭	ㅇ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학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사립유치원(임의가입)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사립유치원(의무가입)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가입대상	○ 학생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 제 료	ㅇ이사회에서 결정	○매년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고시 기준 내에서 이사회 결정
보상범위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사고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학교폭력사고(단, 가해자에게 구상)
보상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소송비용, 합의금 지원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 등
사고통지	○치료 완치 후 신청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통지(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 1. 공제가입자

6.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3에 의한 한국학교

#### 2.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공제료 부과 및 납부

#### 1. 공제료 개념

7.

□ 보상제도 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제기금에 충당할 비용을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

#### 2. 공제료 부과

□ 공제료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이 사회 결정에 따라 학교급별로 책정하고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 3. 납부 방법

- □ 납부인원 : 매년 4월 1일 전북교육통계에 의한 재적학생 수
- □ 납부금액: 재적학생 수 × 학교급별 공제료 기준액
- □ 매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각급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 (단, 2017년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국립 초등·고등학교, <u>재정결함보</u> <u>조금 미지원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유·초·중·고교는 교육청에서 일괄납부</u>)

# Ⅱ.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 학교안전사고 개념 및 조치사항

- 1. 학교안전사고(「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 □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제2조제4호) 장소적+시간적+내용적 요건
  - 1.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학교 안·팎(장소)에서 행하는 수업 등의 활동
  - 2. 학교장 인정 행사(대회) 참가 활동(내용)
  - 3. 등·하교·학교체류·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기숙사생활
  - 4. 집합·해산장소와 거주지의 왕복시간 중의 활동(시간)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제3조)
  -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② 일사병(日射病)

1.

-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 119구조대 연락,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
  □ 지체 없이(통상 7일 이내) 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통보(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의료기관 치료
  □ 공제급여청구: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류 우편 제출
  -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공제급여 지급 결정서는 피공제자의 해당학교에 발송한다.

- ① 사고 발생
  - 1
- ② 구호 활동
- ▶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 1
- ③ 보고 및 연락
- ▶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 ④ 서류 작성 보고
- ▶ 사고통지서 작성
-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 내용 등
-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통보 통지



- ⑤ 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 ▶ 학교에서만 가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공제회에 사고통지
- <u>공제급여관리시스템</u> (www.schoolsafe.or.kr) 접속하여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 ⑥ 학생 치료
- ▶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 중간에도 공제급여청구 가능



- ▶ 학교에서 청구 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 학부모가 청구 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⑦ 공제급여 청구(학교 또는 학부모)
-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 1. 공제급여청구서
-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3. 청구인 통장 사본
- 4.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5.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 6. 주민등록등본(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⑧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공제회)

- ▶ 공제회는 청구서류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결정(14일 연장 가능)
- ► 공제회는 학부모에게 송금 후 '결정 통보서'를 학교로 발송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 ▶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 ▶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공제급여 종류 및 청구 절차

# □ 공제급여 종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u>「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u> 의 규정에 따라 <u>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u> 으로 한다.	법률 제36조
장해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u>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u> 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7조
간병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u>치료를 받은</u> <u>후에도</u>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u>간병이 필요한 경우</u> 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8조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u> 에 「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	법률 제39조
장의비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u> 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법률 제40조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40조 의2

### \_\_\_ 요양급여

「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급

### O 필수 제출서류(공제급여 청구에 필요한 필수서류)

서 류 명	기 타 사 항
7711701 <del>7</del> 1711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접속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청구서	② '청구서 작성'후 출력
발급처: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③ <u>청구인 서명/인</u>
	(청구서 하단 신청인 이름 옆) [방법1]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 청구인 통장시본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발급처: 은행	[방법2]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은행 홈페이지 출력 가능)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처: 병·의원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나 현금영수증만 제출 시 인정불가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발급처: 약국	(반드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진료비 세부내역서	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다른 별도의 서류임
발급처: 병·의원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함)

※ 위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 한 후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별 제출서류'를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O 상황별 제출서류(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 황	서 류 명	발 급 처
·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דו רו זו	ня o1
· 치료부위가 '치아'인 경우	진 단 서	병 원
·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 <del>등록등본</del>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 kr)
·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보상금 수령인=통장 예금주)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
·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가 아닌 친척(할머니, 고모 등)일 경우		kr)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	MRI판독지	병 원
·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 사고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예) 사고당일은 보건실에서 처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간 경우	보건기록지 (=보건일지)	학교 보건실
· 위 보건기록지(=보건일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예) 사고당일에 보건실, 병원 둘 다 가지 않아 사고일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초진기록지	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병원
· 학교회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 선생님 사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행정정보→학교안전 공제회→게시판→제목 : 대납확인서 서식)	공제회에 서식 요청 (☎063-272-0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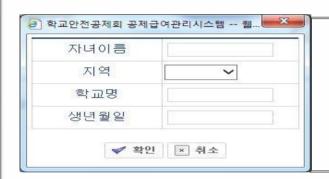
<sup>※</sup> 위 서류 이외에도 공제급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① 요양급여 청구 절차 가. 청구절차(교사용)

-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 주소: http://www.schoolsafe.or.kr
  - 아이디 : 아이디 찾기에서 학교이름 검색, 비밀번호 : 1234(초기설정)
- 2. 상단 [학교안전사고통지] 메뉴를 클릭
- 3. 목록에서 사고 학생 이름으로 사고통지가 접수된 건을 찾기
- 4. 해당 건을 체크하고, 오른쪽 버튼 중 [공제급여지급청구] 버튼 클릭
- 5. **청구서 작성**을 완료 후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클릭 ※ 청구인은 지급받을 통장의 예금주와 일치해야합니다.
- 6. 목록에서 해당 학생 이름으로 청구된 건을 찾기
- 7. 해당 건을 체크하고, 오른쪽 버튼 중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 8. 청구인에게 서명 요청
- 9. 청구서와 청구서류 제출

### 나. 청구절차(학부모용)

-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 주소: http://www.schoolsafe.or.kr
  - 모바일인증 로그인(본인명의 핸드폰 정보입력-문자메시지-인증번호 입력)
- 2.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클릭
- 3. [청구서작성] 버튼 클릭
- 4. [청구서작성] 버튼을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 (※ 만약 뜨지 않을 경우, 화면 좌측 [신규] 옆에 있는 [검색]을 눌러주세요)



- 자녀이름: 자녀의 이름을 입력
- 지역: 전북 선택
- 학교명: 예시) 공제회초등학교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5. 학교에서 통보한 사고통지 목록 중 해당 사고 건 클릭
- 6. 열린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지급받을 통장의 예금주와 일치해야합니다.
- 7. 청구서 작성 완료 후 [공제급여청구]를 클릭
- 8. 목록 중 방금 작성한 청구서를 체크한 후 [인쇄] 버튼 클릭
- 9. 청구서 첫 번째 장 상단 학부모님 성함 옆에 서명 또는 날인
- 10. 청구서와 청구서류를 제출

### O 요양급여 지급범위

- 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
- ②「학교안전법」제36조에 따라「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이되지 않고, 예외적으로「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한하여 지급 가능
- ③ 지급 범위 예시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1.>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		Н	I급여		금액산정내용	
	항목		!인부담	전액	선택	선택진료료	_	진료비 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	진료료	이외	(①-	+2+3+4+5)	
	진 찰 료							환자부담 총액	
	입 원 료						(1)-	-6)+3+4+5	
	식대						(9) O	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행위료								
	조제료 약품비						10	납부할 금액	
	주사료 행위료							(8-9)	
	' '프   약품비							카드	
깁	마취료						⑪ 납부	현금영수증	
기 본 항 목	처치 및 수술료						한 금액	현금	
목	검사료						니버리지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시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í í	·!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 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	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CT 진단료								
섪	MRI 진단료								
선택항목	PET 진단료								
목	초음파진단료								
	보철 • 교정료								
	시행령별표2제4호의 요양급여								
6	5세 이상 등 정액								
정	l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1	2	3	4	5			
	전액 전액 · 입원 : 전액지급 지급 지급 · 통원 : 최초선택진료일부터 14일지급 - 선택진료료 이외 : 지급기준에 정한 항목만 지급				l급				

#### O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인정기준

####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제도 상의 요양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비급여항목은 치료의 필수적 여부, 건강보험기금운용의 정책적 측면 등이 고 려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으로서 환자 본 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제회는 비급여 항목을 원칙적 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한다.

- ① **입원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상급병실(3인실 이하)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음 그 외 경우 상급병실료(1~3인실) 지급은 불가능
- ② 약제비: 처방전에 있는 약제비만 지급
- ③ 한방치료: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④ 선택진료비: 입원 시 전액지원, 통원 시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해 지급
- ⑤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Magntic Resonance imanging):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1회 추가 지급 가능
- ⑥ 무통주사제: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가능
- ⑦ 성형수술비: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2회 이내 인정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반흔으로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인정

#### ⑧ 치아보철

-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당 4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지급
-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 124,000원, 레진 120,000원 범위 내 인정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치아보철을 한 경우 불인정
- ⑨ 재활보조기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기준으로 인정
- ① **진단서 발급수수료** : 제출된 진단서에 한하여 실비 인정

### ] 장해급여

「학교안전법」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u>요양을 종료한 후</u>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함
- 장해급여를 「국가배상법」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 중에 서도 높은 수준의 보상제도로 구현하고 있으나, 타 보상법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공적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 중



### O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장해급여)
- ② 장해진단서(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무릎 전방동요도 검사기록지) ※ 정확한 장해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 재검진 요구할 수 있음.
- ③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④ 의무기록지 일체
- ⑤ 영상판독검사결과 및 영상정보 CD
- ⑥ 장해검사기록지 및 영상정보 CD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통장사본
- ※ 사고부위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장해급여 청구를 원하시면 063-272-0807으로 제출서류 및 청구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_\_] 간병급여

「학교안전법」제38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는**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u>장해등급 제1급에</u>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 **수시간병급여는**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간병급여)
- ② 장해진단서
- ③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통장사본

## 🔝 유족급여(사망)

「학교안전법」제39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실수익+위자료)
- O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유족급여)
-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③ 경유한 모든 병원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일체
- ④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통장사본

### \_\_ 장의비

「학교안전법」제40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사망한 경우에「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아닌 **장의를 행한 자**에 대하여 장의비를 지급 하게 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피공제자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국가배상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한 자에게 지급. 법정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장의를 행한 자에게 지급함

### O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장의비)
- ② 유족급여 청구서류 일체

### \_\_ 위로금

「학교안전법」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 지급
- O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 청구서(위로금)
  - ② 사망진단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통장사본

### 보전비용

「학교안전법」제48조(비용의 보전) ① 공제회는 <u>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u>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 긴급조치, 소송 및 공탁, 경호서비스 등의 비용 보전
  - 대상: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사립학교 설치·경영자

### O 구비서류

- ① 보전비용 청구서
- ②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 3. / 공제급여 지급결정

### 1. 공제급여 처리기일

공제급여 청구 서류를 받은 날(서류완비일)부터 14일이내에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다만,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공제급여 지급 심사 및 결정

- □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14일 연장가능)
- □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관계자에게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3.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 공제급여 지급제한

4.

### 1. 일반적 제한 사유(「학교안전법」제44조)

-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 단, 지급 후 공제회가 구상권 행사 가능

### 2. 다른 법령과의 중복 보상 제한(「학교안전법」제45조)

교육활동 중 발생된 안전사고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1. 자동차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수련원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3. 레프팅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 4. 수영장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5. 현장실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 6. 선박승선실습 사고: 「선원법」 제2조,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 7. 공립 교직원사고: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8. 사립 교직원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사학연금공단(1588-4110)
- 9. 비정규 교직원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근로복지공단(1588-0075)

## 3. 기타 제한 사유(「학교안전법」 제43조 및 45조)

-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경우
- □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가해자가 있는 비의도적 사고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

### 4. 공제급여 소멸시효

「학교안전법」제65조(시효) ①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 '<u>사고발생일</u>' 또는 '<u>공제급여를 지급받은 날</u>'로부터 <u>3년</u>

# 5. 공제급여 부정수급

### 1.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 □「학교안전법」제71조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 2. 부정수급 신고센터

- □ 신고내용: 허위신고, 과잉(허위)진료, 불법 브로커 개입 등
- □ 신고방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f.or.kr)홈페이지 접속 후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배너 클릭

# 6. 요양연장신청 제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u>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u>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대법원 판례(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공제급여 청구)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u>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u> 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u>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u>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학교안전법」상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장래에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요양연장신청 제도를 도입함.

### ○ 요양연장신청 방법

- □ 청구인이 **요양연장신청서**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제출.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전문의 소견에는
  - ① 피공제자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 ② 향후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공제회의 요양연장신청 승인 결정 후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피공제자가 나중에 치료를 받은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심리상담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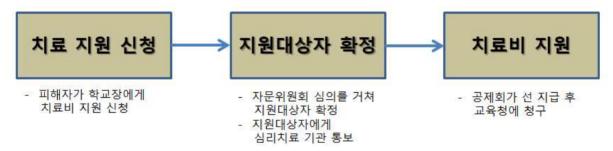
「학교안전법」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원 대상

7.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 2. 심리상담 지원 신청절차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 중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제출서류 : 신청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의무기록 등
- 학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에 지원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 <학교장 확인 사항>

- △ 적법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적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적법한 대리권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치료대상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학교장은 신청서류 반려 가능

- □ 신청서 접수
   공제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자문위원회'에 심의 개최 요청
   □ 자문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자문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 및 공제회에 통보
-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은 신청인이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치료 진행한 후 그 치료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가 해당 치료비를 지급

○ 학교장은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치료비 신청 절차 등 안내

- \*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외의 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경우 관계없음)
- □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신청
  -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연장 신청(이하 상담지원 등에 대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

## 3. 지원 범위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u>기간을</u> 연장할 수 있다.

## 4. 상담 지원 기관

-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 □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구분	지역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1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10-6215-6595
2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 1가 454-3	063-224-8338
3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4	전주	온다라 심리교육 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010-3657-7387
5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1544-0744
6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7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10-9660-3131
8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9	남원	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10 2층	063-625-2012
10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11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10-3650-5923
12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1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APT 105/102	010-7343-9775

<sup>\* &</sup>lt;u>위 심리상담기관 외의 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u> 의료기관(병원,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Ⅲ.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호마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지원내용

1. /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 지원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 지원범위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b>교육감 지정 기관</b> 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b>2년</b>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 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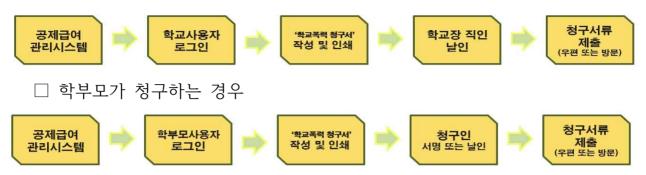
- □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소년·소녀 가장과 같이 학생 본인이 보호자인 경우 학생 본인도 포함)
- □ 청구요건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치료 후 청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결 후 청구

## 3. 학교폭력 발생 통지(학교)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학교사용자 로그인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가해학생 보호자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등)필히 기재

### 4.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 절차(학교 또는 학부모)

□ 학교에서 청구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통보서 등
- 그 외 구비서류는 공제급여 청구와 동일
  - \*\* 학교폭력과 피해학생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서, 심리검사결과지, 과거진료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5.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지급 절차

- □ 사고통지 및 청구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조사 후 지급 결정
-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된 내용을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 앞으로 구상하게 됨을 고지
- □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치료비 지원액 결정

### 6.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구분	지역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1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10-6215-6595
2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 1가 454-3	063-224-8338
3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4	전주	온다라 심리교육 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010-3657-7387
5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1544-0744
6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7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10-9660-3131
8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9	남원	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10 2층	063-625-2012
10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11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10-3650-5923
12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1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APT 105/102	010-7343-9775

\* <u>위 심리상담기관 외의 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u> 의료기관(병원,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MEMO

# MEMO